

# 「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11월 10일, 심현정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8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5년 11월 25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심현정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우리군의 역사적 자산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계승·발전시키고, 이를 선양·활용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역의 문화 진흥과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기본 목적 명시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제4조)
- 실록·의궤의 선양 및 활용을 위한 주요사업 제시(안 제5조)
-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민·관 협력 조항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유진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.....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 「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심현정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11. 10.
- 회부일자 : 2025. 11. 18.
- 상정일자 : 2025. 11. 25.

### 2. 제안이유

- 우리군의 역사적 자산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계승·발전시키고, 이를 선양·활용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역의 문화 진흥과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기본 목적 명시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제4조)
- 실록·의궤의 선양 및 활용을 위한 주요사업 제시(안 제5조)
-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민·관 협력 조항(안 제7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국가유산을 보존·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를 보존·관리·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진흥과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군수의 책무)에서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5조(사업)에서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역사적·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- 안 제6조(사업비의 지원)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7조(협력체계 구축)에서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보존·관리와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며 나아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□ **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**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□ **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**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□ **국가유산기본법**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·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

(심현정 의원)

의안 번호	50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11월 6일

발 의 자 심현정 의원

찬 성 자 박춘희, 김성기, 김광성의원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의 역사적 자산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계승·발전시키고, 이를 선양(宣揚)·활용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역의 문화 진흥과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## 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제4조)
- 실록·의궤의 선양 및 활용을 위한 주요사업(안 제5조)
- 제정지원의 근거(안 제6조)
- 민·관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

<p>제2조제4호</p> <p>4. “<u>디지털 아카이브 구축</u>”이란 <u>조선왕조실록·의궤 및 관련 기록유산을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·변환·저장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·교육·전시·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	<p>삭제</p> <p>⇒사유 : “디지털 아카이브 구축”용어 정의는 제5조(사업)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</p>	
<p>제3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「<u>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</u>」에 따라 <u>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군수의 책무) -----<u>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⇒ 사유 :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지원 및 활용을 위해 상위 법령명 삭제</p>	
<p>제6조(사업비의 지원)</p>	<p>제6조제2항 신설</p> <p>② <u>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</p> <p>⇒ 사유 : 사업비의 보조금 지원 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근거 조항 추가</p>	
<p>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<u>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협력할 수 있다.</u></p> <p>⇒ 사유 :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강제 조항 완화</p>	

##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의 역사적 자산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계승·발전시키고, 이를 선양(宣揚)·활용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역의 문화 진흥과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조선왕조실록·의궤”란 오대산사고본으로서 반환·보존된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조의궤를 말한다.
2. “선양(宣揚)”이란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역사적·문화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3. “활용”이란 조선왕조실록·의궤를 문화·교육·관광 자원으로 개발·운영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4. “디지털 아카이브 구축”이란 조선왕조실록·의궤 및 관련 기록유산을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·변환·저장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·교육·전시·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조선왕조실록·의궤 선양 및 활용 지원에 관하여

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사업) 군수는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역사적·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

1. 조선왕조실록·의궤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
2. 조선왕조실록·의궤 선양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기념행사
3.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기록유산의 보존·활용 사업
4. 조선왕조실록·의궤를 활용한 문화·관광 자원 개발
5. 그 밖에 조선왕조실록·의궤 선양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사업비의 지원)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**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**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, 이해관계자,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**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8. 8.>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8. 8.>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·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8. 8.>
- ④ 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8. 8.>

제22조의14(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·개발·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.

1.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·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2.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
3.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

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국민, 대학,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수요, 이용현황,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.<개정 2024. 2. 13.>

[본조신설 2024. 1. 9.]

## 국가유산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·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23조(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관람·전시·교육·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·경제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 유산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4조(국가유산정보 관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·융합을 통하여 국가 유산데이터를 생산·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유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플랫폼 구축·운영 등 국가유산정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5조(국가유산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·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·운영할 수 있다.

제26조(국가유산홍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.

제27조(산업 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·제작·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·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(제3조제1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

나. 관련조문: 제정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제1항

- 제정조례안 제5조(사업): 군수는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역사적·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조선왕조실록·의궤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
2. 조선왕조실록·의궤 선양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기념행사
3.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기록유산의 보존·활용 사업
4. 조선왕조실록·의궤를 활용한 문화·관광 자원 개발
5. 그 밖에 조선왕조실록·의궤 선양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제정조례안 제6조(사업비의 지원):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 관련 사업 진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항목별 적용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내 역	예산액(연간)	비 고
합 계		294,000	
민간이전	민간경상사업보조(307-02) : 조선왕조실록·의궤 환지본처 기념사업	150,000	*2025년 100,000천원
민간이전	민간경상사업보조(307-02) : 조선왕조실록·의궤 활용 프로그램	100,000	*2025,2026년 50,000천원
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(201-01) : 조선왕조실록·의궤 기념품 개발	22,000	
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(201-01) : 조선왕조실록·의궤 교육 프로그램 운영	22,000	

다. 재원조달 방안

- 의존재원(보조금) 및 자체수입(지방세) 조달

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장 박용호
연락처	(033) 330 - 2044

**< 연도별 비용추계표 >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<b>세 입</b>		<b>244,000</b>	<b>294,000</b>	<b>294,000</b>	<b>294,000</b>	<b>294,000</b>	<b>1,420,000</b>
국고보조금		25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25,000
시·도비보조금		52,500	60,000	60,000	60,000	60,000	292,500
지방세수입		166,500	184,000	184,000	184,000	184,000	902,500
<b>세 출</b>		<b>244,000</b>	<b>294,000</b>	<b>294,000</b>	<b>294,000</b>	<b>294,000</b>	<b>1,420,000</b>
조선왕조실록의궤 활용 사업		244,000	294,000	294,000	294,000	294,000	1,420,000
<b>재원 조달</b>		<b>244,000</b>	<b>294,000</b>	<b>294,000</b>	<b>294,000</b>	<b>294,000</b>	<b>1,420,000</b>
의존 재원	소 계	77,500	110,000	110,000	110,000	110,000	517,500
	보조금	77,500	110,000	110,000	110,000	110,000	517,500
자체 수입	소 계	166,500	184,000	184,000	184,000	184,000	902,500
	지방세	166,500	184,000	184,000	184,000	184,000	902,500